충북대학교

서울어코드사업단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경제부의 서울어코드활성화지원사업을 통한 충북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의 교육 혁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서울어코드사업단"의 조직구성, 사업추진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어코드사업단(이하 사업단이하 함)을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내에 둔다.

제3조(사업) 사업단은 서울어코드활성화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과과정 개선 및 운영 사업
2. 교수법 및 학습방식 개선 사업
3. 교육환경 개선 사업
4. 산학협력 강화 사업
5. 교육중심의 교수업적평가제도 개선 사업
6. 기타 서울어코드활성화지원사업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환류체계 운영) 사업단의 각 조직 및 위원회 등은 목표 설정, 추진계획 수립, 추진 결과 평가, 개선 방안의 도출과 적용과 같은 명시적인 환류체계를 기반으로 해당 조직의 사업 수행 혹은 위원회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 2 장 기구 및 조직

제5조(사업단장) ① 사업단에는 사업단장을 두며 소프트웨어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단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조직) ① 사업단에는 사업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활동관리팀, 산학협력지원팀, 성과평가관리팀과 사업지원팀(행정실)을 둔다.
② 사업단의 각 팀장은 소속 교수나 사업단 초빙교원 중에서 사업단장이 임명한다.
③ 각 팀장은 해당 조직의 업무를 총괄하고 사업단장을 보좌하며, 교육활동관리팀장은 사업단장의 유고시 사업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기능) 사업단의 각 조직에 대한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1. 교육활동관리팀은 학습자 자율형 학습 문화 조성, LMS 운영, 교과운영 결과 리뷰, 교과과정의 평가 및 개선, Catch-Up®/Keep-Up® 프로그램 운영, 프로젝트 수행 능력 함양을 위한 Base-Up® 및 Grow-Up® 모델 관리, 방학 특강 및 어학 특강,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실습 환경 개선, HelpDesk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산학협력지원팀은 산학협력추진위원회 운영, Engage-Up® 모델 운영, 각종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 현장 중심 교과 요구사항 도출, 가족협력회사 확장, 인턴쉽, 멘토링, 캡스톤디자인 추진, 가족회사와 동아리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성과평가관리팀은 교육목표, 학습성과, 교과과정 평가 등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측정 및 분석, 성과지표 관리, 교수법 활용 활성화, 서울어코드 우수학생 선발, CPM 활용 제고, 만족도 조사 및 반영, 서울어코드우수교수 선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사업지원팀은 사업단 예산 집행, 위원회 운영 지원 및 기타 사업단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사업운영위원회) 사업단과 학내·외 유관기관간의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업운영위원회를 둔다.

제9조(교수평가위원회) 교수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영역

의 업적우수교수를 선발하기 위하여 교수평가위원회를 둔다.

제10조(산학협력추진위원회) 학부생 중심의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위원회를 둔다.

제11조(가족회사협의회)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회사협의회를 둔다.

제12조(Engage-Up®협의회) 취업연계형 산학협력 모델인 Engage-Up® 모델 추진과 관련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Engage-Up®협의회를 둔다.

제 3 장 사업운영위원회

제13조(구성)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되고 위원은 소프트웨어학과 학과장과 산학협력중점교수, 교수학습지원센터 센터장, 산학협력단 부단장, LINC사업단 부단장, 취업지원본부장, 전자정보대학 부학장과 학과가족회사의 대표자 2인으로(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인사들)로 구성한다.
③ 간사는 산학협력중점교수가 맡는다.

제14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단 운영규정 개정
2. 년도별 사업계획 자문
3. 세부사업 추진 관련 협력
4. 기타 서울어코드활성화지원사업에 필요한 주요 사항

제15조(회의) ① 사업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사업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찬·반 동 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교수평가위원회

제16조(구성)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수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업단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외부 인사(대학 및 산업체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 인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7조(기능) 교수평가위원회는 교수법의 질적 개선 방안의 모색과 교육영역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영역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사항
2. 서울어코드 우수 교수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8조(회의) ① 교수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교수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찬·반 동 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산학협력추진위원회

제19조(구성)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산학협력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중점교수가 되고 위원은 산학협력지원팀장과 소속 교수 및 가족회사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제20조(기능) 산학협력추진위원회는 원활한 산학협력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1.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현장 중심의 교과 요구사항에 관한 사항
3. 학과가족회사 확장에 관한 사항
4. 인턴쉽, 멘토링, 캡스톤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1조(회의) ① 산학협력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산학협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찬·반 동 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가족회사협의회

제22조(구성)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가족회사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지원팀장이 되고 위원은 학과가족회사의 대표들로 구성한다.

제23조(기능) 가족회사협의회는 원활한 산학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산학협력지원팀에 제공한다.

1. 인턴쉽 및 산학협력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취업 만족도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회의) ① 가족회사협의회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가족회사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찬·반 동 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7 장 Engage-Up®협의회

제22조(구성)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Engage-Up®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협약 체결 기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지원팀장이 되고 위원은 Engage-Up® 모델 협약 체결 기업의 대표들로 구성한다.

제23조(기능) Engage-Up®협의회는 원활한 취업연계형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산학협력지원팀에 제공한다.
1. Engage-Up® 모델의 지속적 개선에 관한 사항
2. Engage-Up® 모델 만족도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회의) ① Engage-Up®협의회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Engage-Up®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찬·반 동 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8 장 재정 및 회계

제28조(재정) ① 사업단의 재정은 국고지원금, 대학의 대응자금 등으로 한다.
② 재정은 대학의 산학협력회계로 운영한다.

제29조(회계) 사업에 수반되는 회계업무는 이 사업의 관리기관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와 산학협력단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0조(수당 및 보수) 사업에 관여하는 인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운영의 세부사항

제31조(준용)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일반 사항에 관하여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서울어코드활성화지원사업 공고 내용에 근거하여 사업단장의 해석에 따른다.

제32조(세부사항) 서울어코드활성화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단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규정은 서울어코드활성화지원사업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